

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

▣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(주식) 집합규약 변경 전·후 비교표

- 다 음 -

항목	정정사유	변경전	변경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③(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)	클래스 I 가입자격요건 법령 변경	8. 클래스 I 수익증권: 투자자의 자격을 집합투자기구, 법인세법 시행령 제 17 조의 2 제 8 항에 따른 기관투자자, 기금 관리 기본법에 따른 기금, 100 억 이상 개인, 500 억 이상 일반법인에 한하며 선취판매 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	8. 클래스 I 수익증권: 투자자의 자격을 집합투자기구, 법인세법 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), 100 억 이상 개인, 500 억 이상 일반법인에 한하며 선취판매 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

▣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(주식) 투자설명서 변경 전·후 비교표

항목	정정사유	변경전		변경후	
제 2 부. 집합투자구에 관한 사항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	클래스 I 가입자격요건 법령 변경	구분	클래스 I	구분	클래스 I
		가입자격	집합투자기구, 법인세법 시행령 제 17 조의 2 제 8 항에 따른 기관투자자,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기금, 100 억 이상 개인, 500 억 이상 일반법인	가입자격	집합투자기구, 법인세법 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), 100 억 이상 개인, 500 억 이상 일반법인

항목	정정사유	변경전		변경후	
		종류	구분	종류	구분
제 2 부.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 11. 매입, 환매, 전 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 (2)종류별 가입자격	클래스 I 가입자격요 건 법령 변경	클래스 I	집합투자기 구, 법인세법 시행령 제 17 조의 2 제 8 항에 따 른 기관투자 자,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 른 기금, 100 억이상 개인, 500 억 이상 일반법인	클래스 I	집합투자기구, 법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 및 금 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 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 에 따른 기금(외 국의 법령상 이 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), 100 억 이상 개인, 500 억 이상 일 반법인